

3. 중소기업진흥공단





20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안내

2018. 1

I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II
 -
 2018년
 세부 자금 별
 지원계획



01. 정책자금 지원체제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행성오락업종, 고소득 직종,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제외

***전략산업**

미래신성장분야, 부리산업, 소재·부품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차 부당 개입 등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제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지원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 용자제한기업

- ⑧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점 지원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종업원 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및 전락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⑨ 중진공 지정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 용자제한기업

- ⑩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신청년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용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복합금융사업(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⑫ 중진공 정책자금(운전)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하는 자문에 한하여 적용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으로·재해),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구조개선), 수출금융지원자금 성장공유형자금은 예외
- ※ 용자제한기업 항목(①~⑫)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용자계획에서 규정

03. 정책자금 규모

(단위 : 억원)

사업	예산	내역사업	사업분야
창업기업지원자금	18,660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창업기업지원 • 청년전용창업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공유형 • 성장공유형 	저금리 대출 후 영업이익 공유 전환사채 인수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 (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술사업화 • 글로벌진출지원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수출기업
신성장기반자금	8,800 (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유망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제조현장스마트화 	성장유망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동화 시설 도입
재도약지원자금	2,290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 무역조정 • 구조개선전용 • 재창업 	업종전환(추가) 및 FTA무역피해기업 부실징후기업 실패 기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중소기업 • 일시적경영애로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피해기업 경영애로기업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예산 총계 : 37,350 (경남 1,336)

04. 정책자금 기준금리

$$\text{정책자금 금리} = \text{① 기준금리} + \text{② 사업별 가감금리}$$

① 기준금리 ('18.1분기 2.30%)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연동(조정계수 차감)

* 분기별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전전분기 종료월 21일 ~ 전분기 종료월 20일' 누적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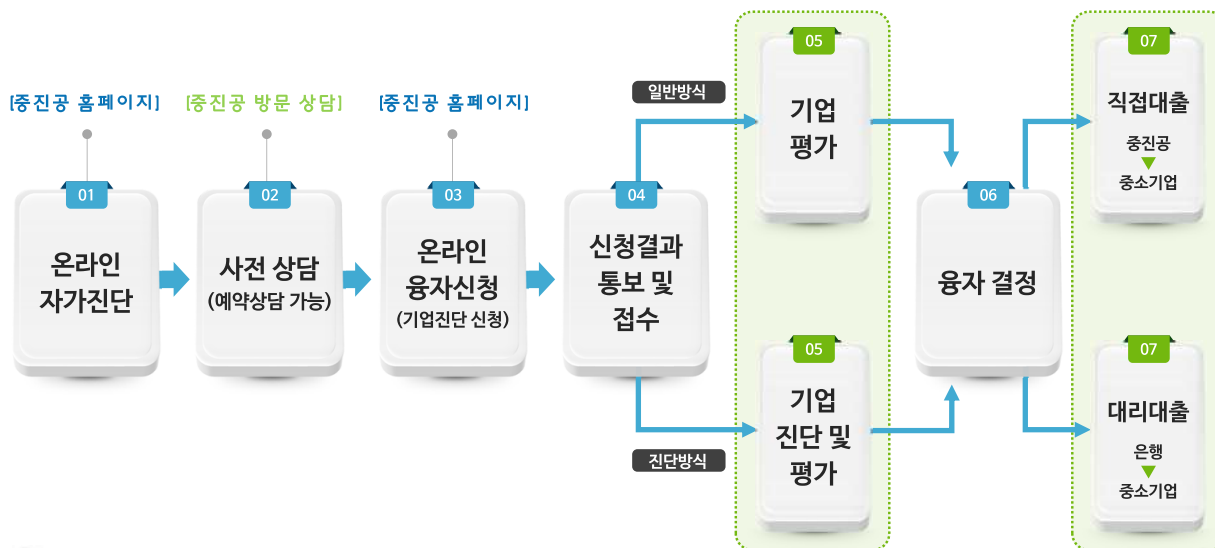
② 사업별 기준금리 그룹

	자금명	사업별 기준금리
0그룹	창업기업지원 [일반, 창업사업 연계자금], 신시장진출지원 [글로벌진출(수출금융)]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1그룹	신성장기반 [(유망(인재육성형, 협동화), 제조현장스마트화) 재도약지원 (무역조정 제외), 신시장진출지원 [개발기술, 글로벌진출(수출사업화)]	정책자금 기준금리
2그룹	신성장기반 [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3그룹	긴급경영안정 (일시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

* 시설자금은 0.3%p 금리 우대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사업별 고정금리 적용 가능(협동화·협업 제외)

05. 정책자금 지원절차



06. 용자 신청 및 접수

용자신청은 **온라인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시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온라인자가진단

용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 상담하여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여부 결정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사전상담 예약 시 우선상담

온라인신청

신청기회를 부여 받은 기업은 기한 내에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용자신청

- * 온라인으로 용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07. 정책자금 평가방식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한 기술사업성 평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Version 1.0

- 시기 : '04년
- 주요내용 : 기업평가 모형 도입

Version 2.0

- 시기 : '05~'08년
- 주요내용 :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Version 3.0

- 시기 : '09~'18년
- 주요내용 :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 모형 개편 및 고도화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산출하고, 신용위험등급을 최소 조정 반영하여 **기업평가 등급 산출**

기업평가

- * 업력 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 기업의 경우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출

기술 사업성 평가

기술사업성평가모형 → 기술사업성 평점 → 기술사업성 등급

신용 위험 평가

재무모형 → 재무평점
 계량비재무모형 → 계량비재무평점
 대표자모형 → 대표자평점
 Model Combination → 신용 위험 등급

용자지원결정

기업 평가 등급

08. 정책자금 집행방식

진단기반 맞춤형연계지원

* 기업 여건에 따라 Two-Track(기업진단 연계 또는 일반지원)으로 운영

	기업진단 연계 방식	일반 방식
지원절차	진단신청 → 진단·평가 → 자금지원+맞춤연계	자금신청 → 평가 → 자금지원
지원규모	1.3조원	2.4조원
처리기간	사업별 처리기간 (최대 30일)	사업별 처리기간 (최대 20일)

기업진단 프로그램 추진체계

* 업종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09. 정책자금 상환절차

상환안내

- ✓ 대출금 지급 후 2일(토요일, 휴일제외) 후에 상환기일표를 등기로 발송
- ✓ 원리금 납입기일 20일 전에 대출원리금 상환안내문을 e-mail, 우편 등으로 안내
- ✓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고객으로 등록된 업체는 상환 2일전에 SMS로 별도 통지

상환방법

	원금	이자
상환방법	매 월납 또는 분기납 선택	매월 후취

- ✓ 자동납부 희망업체는 자동이체를 활용
- ✓ 업체 희망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
- ✓ 일시적 자금경색 회복을 위한 상환유예 가능

납입기일

- ✓ 선택한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결정
- ✓ 수출금융지원자금 등 회전한도방식 용자금은 대출기간 종료일이 납입기일

09. 정책자금 상환절차

기업자를 상환제도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액대출(50백만원 미만)에 적용

제한사항

- ✓ 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 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

(예시)

- ✓ 대출금액 40백만원으로 가정한 상환금액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상환비율	1/4				1/4	1/2
상환금액	10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10.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기준

- ✓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 ✓ (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10.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조치

부당개입 행위자

- 부당개입 활동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되거나 정책목적성이 훼손될 경우 형사고발, 자격정지, 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

부당개입 중소기업

- 융자금 조기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신고자

- 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진공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I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II
-
2018년
세부 자금 별
지원계획



01.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용자규모** 17,360억원

01 용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 창업 자금 지원 제외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창업사업연계자금 : 창업투자(민간VC 등 투자유지), 창업 R&D(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등), 창업 BI(정부 및 지자체, 대학 비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02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0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신용대출은 6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04 대출한도

- 업체당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05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01.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목적**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
- 용자규모** 1,300억원

01 용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용자시점에 사업자등록 필요)

02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03 대출기간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 3년)
- * 5천만원 미만 대출 기업은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04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05 지원방식 (용자상환금조정형)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02. 투융자복합금융

투융자복합금융

- 사업목적**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 도모
- 융자규모** 1,700억원

신청 대상

이익
공유형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성장
공유형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02.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조건

이익공유형

- 고정이자** : 0.5% (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성장공유형

-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지원기간 내 IPO가능성 등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중진공 결정)
- 미 전환 시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업체당 연간 45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대출액의 150%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업력 3년 미만 기업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 업력 3년 미만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용자규모** 3,150억원

01 용자대상

- ①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② 자체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02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04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금융지원)

수출금융지원자금

- 사업목적**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소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 촉진
- 용자규모** 1,250억원

01 용자대상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02 용자범위

수출계약 I/C, D/A, D/P, Local I/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04 대출기간

1년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 상환

05 대출한도

기업당 20억원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사업화)

수출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 촉진
- 용자규모** 500억원

01 용자대상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02 용자범위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4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05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4.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용자규모** 8,800억원
* 신성장유망 5,000억원,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500억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3,300억원

용자 대상

-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 및 관련기업,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기술 영위기업,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04. 신성장기반자금

01 용자범위

-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도입, 사업장건축(토지구입비포함),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유통 물류시설 설치,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자금 등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 50% 이내), 별도기준 충족 시 운전자금 허용 등

02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0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04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05. 제도약지원자금

👤 제도약지원자금

-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제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용자규모** : 2,290억원

01 용자대상

재창업자금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신용 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 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자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정 경영애로(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 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 판정기업

05. 제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①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개념

※ 용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업종전환	업종추가
전환내용	현재 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 폐기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전환비중	3년 내 완전전환	3년 내 30% 이상

- * 전환비중 : 전환(추가)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 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되어야 함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 용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 ▪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 변화를 종합적 고려)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용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05. 제도약지원자금

01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중고설비 포함), 정보화 설비,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경비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

02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재창업자금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03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04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70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 재창업자금은 용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06.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용자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원

01 용자대상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시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횡수제한 적용 예외)

02 용자범위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기업정상화 소요 경비
 - *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시피해기업, 승인서적 부도관련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고정금리) : 연 1.9%

04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05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참고 정책자금 상담·문의처 (중진공 지역본·지부)

수도권

- 서울(목동) 02) 6678-4127
- 서울동남부(서초구) 02) 2156-2200
- 서울북부(중구) 02) 769-6436
- 인천(연수구) 032) 450-0500
- 인천서부(서구) 032) 450-0560
- 경기(수원시) 031) 259-7900
- 경기동부(성남시) 031) 788-7300
- 경기서부(안산시) 031) 496-1000
- 경기북부(고양시) 031) 920-6700

충청권

- 대전세종(대전시) 042) 866-0114
- 충남(천안시) 041) 621-3687
- 충북(청주시) 043) 230-6800
- 충북북부(충주시) 043) 841-3600

전라권

- 광주(광주시) 062) 600-3000
- 전북(전주시) 063) 210-9900
- 전북서부(군산시) 063) 460-9800
- 전남(무안군) 061) 280-8000
- 전남동부(순천시) 061) 724-1045

강원권

- 강원(춘천시) 033) 259-7600
- 강원영동(강릉시) 033) 655-8870

경상권

- 대구(대구시) 053) 601-5300
- 경북(구미시) 054) 476-9340
- 경북동부(포항시) 054) 223-2046
- 경북남부(경산시) 053) 212-3300
- 부산(사상구) 051) 630-7400
- 부산동부(해운대구) 051) 784-3630
- 울산(울산시) 052) 703-1100
- 경남(창원시) 055) 212-1350
- 경남동부(김해시) 055) 310-6600
- 경남서부(진주시) 055) 756-3060

제주권

- 제주(제주시) 064) 751-207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 안은 각 지역본·지부 소재지
 * 홈페이지(hp.sbc.or.kr) 내 오시는 길, 관할지역 참조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감사합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



2018년도 중소기업·중견기업 시책 (수출)

2018.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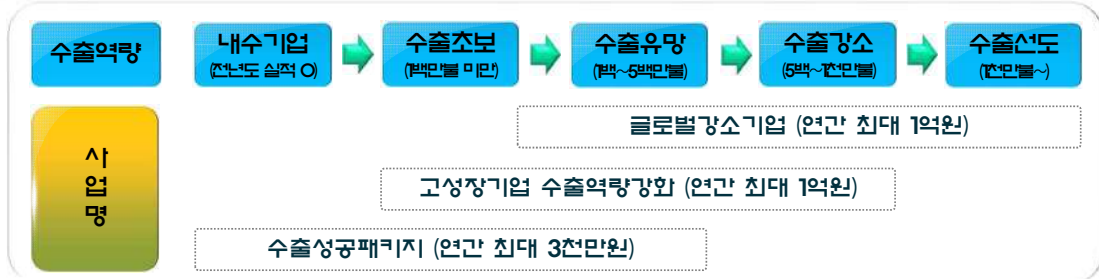
I 지원기관

1.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협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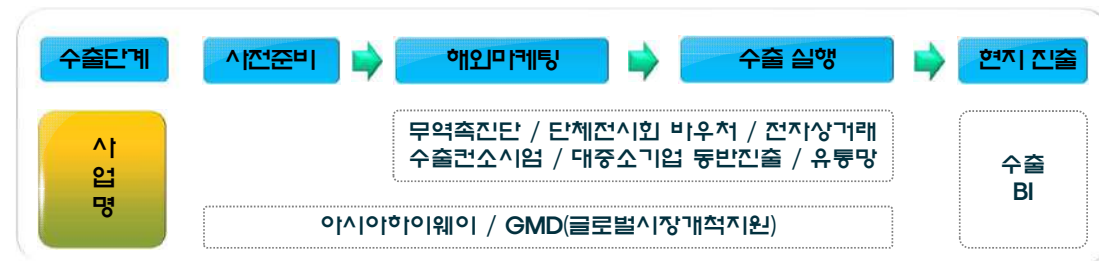
수출 총괄

중소기업 수출 역량 · 단계별 정책 포트폴리오

■ 수출 역량별



■ 수출 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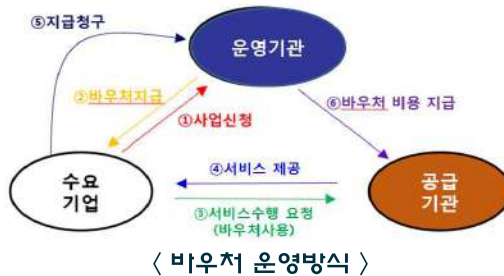
수출 총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 : ('17년) 1,961 (추경포함) → ('18년) 1,866억원

□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서비스 제공

- 수출중소기업이 직접 필요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및 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제공

* '18년 5개 세부사업, 1,099억원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아시아하이웨이
단체 해외전시회 바우처

□ 온라인 수출 활성화

- 전자상거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SNS의 판매채널 활용 및 파워블로거 마케팅 등 SNS 활용 다각화
-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해외 정책매장을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체험·구매·픽업 공간으로 활용

II 중소기업부

1. 수출성공패키지
2.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4.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5. 아시아하이웨이 사업



1. 수출성공패키지

중소기업 글로벌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 전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활동을 맞춤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규모

● 499억원, 2,076개사 내외(수출기업화 20백만원 한도, 수출고도화 30백만원 한도)
* '17년 기업화 145개사, 고도화 44개 총 189개사 선정



내용

- 수출준비: 수출전략수립, 수출브랜드개발, 외국어웹페이지 제작, 온라인카달로그, 외국어통번역, 지재권등록, 무역교육,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 거래선발굴: 홍보·광고, 온라인마케팅, 조사·컨설팅, 전시회, 상담회 등
- 계약체결: 신용조사, 관세환급컨설팅, 계약서 작성대행,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통관/선적필요서류, 사후관리필요서류 등
- 해외진출: 해외투자환결조사, 현지법인설립, 현지 시험·인허가 등



신청

● 공고일정: (신청/접수) '18년 1월 중, 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2.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마케팅, R&D 지원 등을 통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



대상

- 직수출 500만불 이상(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은 100만불 이상)



규모

- 100억원, 200개사 내외
- *'18년 경남지역 14개사 선정 예정(전국 200개사), '17년 8개사 선정(전국 130개사)



내용

- (R&D 지원)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IP 전략수립 지원(240억원, 142개 업체)
- (해외마케팅)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100억원, 200개 업체)
- (지방자율) 시제품 제작, 전문연구장비 활용, 경영컨설팅 등 지원(기업당 3천만원 이내)
- (우대지원)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다양한 금융 및 보증 지원 혜택 제공



신청

- 공고일정 : (신청/접수) '18년 1월 중, 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 접수

38⁷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성공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



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규모

- 비예산 사업, 1,000개사 내외
- *'17년 경남지역 상반기 34개사, 하반기 32개사 총 66개사 지정



내용

- (수출지원사업 참여우대)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선정 시 우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 시 가점, 해외마케팅 사업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해외수출 시 법률, 세무상담,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신청

- 공고일정 : (신청/접수) '18년 4,10월, 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39

4.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



대상

-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규모

- 106.5억원, 1,000개사 내외
- * '15년 124개사, '16년 117개사, '17년 45개사 지원,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3개사 26백만원 지원



내용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50~70%)
- 주요 분야 및 시장별 인증정보 제공, 인증기술문서 작성교육, 인증 기술지원 등 실시



신청

- 공고일정: (신청/접수) '18년 1월 공고(예정)

44

5.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

중소기업이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성공적으로 시장진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 전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활동을 지원



대상

- 중국 또는 아세안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시장 개척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규모

- 150억원, 300개사 내외



내용

- 수출준비: 경영멘토링, 수출프렌드개발, 영문웹페이지 제작, 온라인카달로그, 외국어통번역사업, 인증·시험 컨설팅, 디자인·매뉴얼 제작 등
- 거래선발굴: 홍보·광고, 온라인마케팅, 조사·컨설팅, 전시회, 상담회 등
- 계약체결: 보험료/보증료 할인,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계약서 작성지원,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사후관리필요서류 등
- 해외진출: 현지법인설립, 지재권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등



신청

- 공고일정: (신청/접수) '18년 1월 중, 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 접수

38

III 중소기업진흥공단

1.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2. 전자상거래수출시장
3.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4.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5.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1.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해외정책매장, 대리점(상) 등을 통해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소비시장 진출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



규모

- 15억원, 600개사 내외(해외정책매장 400개사, 대리점(상) 200개사)



내용

- 매장입점 : 해외에 설치(지정) 된 해외정책매장, 대리점 내 중소기업 제품의 입점을 통해 판매 및 현지 유통망 진출지원
- 현지화 : 입점 선정상품에 대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코칭과 제품포장, 디자인, 번역 등의 현지화 지원
- 프로모션 : 제품의 판매제고를 위해 홈쇼핑 입점, 판촉전, 매칭 상담회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 지원



신청

- 신청/접수 : 상품소싱시스템(b2c.gobizkorea.com)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55-751-9761, 9763

2.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해외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SNS 마케팅, 파워셀러 육성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해외수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

- 국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규모

- 138.6억 원, 3,290개사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3,000개사, SNS 마케팅 290개사) / 전자상거래 전문가 1,400명



내용

-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 쇼핑몰 입점판매에 필요한 상품페이지제작, 홍보, 배송, 고객 응대, 사후관리 등 판매 전 과정을 전문기업을 통해 지원(자부담금 10%)
- SNS 마케팅 :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MCN 활용한 마케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파워셀러 등 전자상거래 전문가 육성



신청

-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통한 온라인 신청(17.2월~, 수시모집)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지원처 055-751-9771, 9776

43

3.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



대상

- 제조업(전업률 30%),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규모

- 세계 14개국 22개 지역 302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m²)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신청

- 공고일정 : 연중수시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3, 9678

45

4. 고성장기업 수출 역량강화 지원





고용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전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활동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으로서, 최근 4개년간(14~17년) 상시종업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중소기업(단, 지방소재 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0억원, 580개사 내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준비: 경영멘토링, 수출프랜즈개발, 영문웹페이지 제작, 온라인카달로그, 외국어통번역사업, 인증·시험 컨설팅, 디자인·매뉴얼 제작 등 거래선발굴: 홍보·광고, 온라인마케팅, 조사·컨설팅, 전시회, 상담회 등 계약체결: 보험료/보증료 할인,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계약서 작성지원,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사후관리필요서류 등 해외진출: 현지법인설립, 지재권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등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정: (신청/접수) '18년 1월 중, 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사업팀

38⁵

5.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억, GMD가 선정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연 200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개척 비용 지원(보조율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규격인증, 홍보비, 전담인력 인건비(신규), 출장비 등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1년), 수출사업화자금(장기5년) 금리우대 및 한도확대 해외규격인증 우대선정, 수출 R&D(서면평가 면제) 등 타 수출사업 연계지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정: (신청/접수) '18년 2월~'18년 12월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725

48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협력재단

- 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2. 수출컨소시엄 사업
- 3. 대중소기업 동반지출 지원



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의 참여를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기획 확보 등을 지원**



대상

-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 단체 및 수출유관기관(주관기관)
- 해외바이어 발굴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참여기업)



규모

- 85.5억원, 1500개 내외 (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비의 50%, 11백만원 한도)



내용

- 1단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단체 선정(전년도 기선정)
- 2단계- 주관단체에서 무역촉진단으로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해외전시회	해외 전문 업종별 전시회 한국(단체)관 운영	·기업당 11백만원 한도 ·공통비용 50% 이내
시장개척단	유관기관협업을 통한 해외 틈새시장 개척	·기업당 11백만원 한도 ·공통비용 100% 이내



신청

- 공고일정 : (신청/접수) '18년 1월 중, 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4)

2. 수출컨소시엄사업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대상

-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 단체,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및 수출유관기관(주관기관)
-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참여기업)



규모

- 60억원, 30개 컨소시엄 내외
- * '17년 경남 향노화바이오산업 수출컨소시엄 구성(16개사)



내용

- 최대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약 2.5억원 한도)
-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전준비(1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 비용

현지파견(2단계)
수출상담회(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등 현지파견 비용

사후관리(3단계)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신청

- 공고일정 : (신청/접수) '18년 2월 중, 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4)

40⁹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판로 개척 지원



대상

-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1개사 이상으로 이루어진 해외 동반진출 컨소시엄
- *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을 의미



규모

- 78.75억원, 1,100개 내외(업체당 10~25백만원 한도)



내용

- 한류연계 - 해외 현지 글로벌 한류 문화행사(KCON, MAMA, 글로벌 팬미팅 등)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B2B), 판매전(B2C) 지원, 스타마케팅 지원
- 해외홍소핑 - 홍소핑 대기업 보유 해외채널(13개국 27개 채널) 내 해외홍소핑 방송 및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
- 해외거점 - 대기업 해외 온/오프라인 거점 활용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화, 안정화 지원 등



신청

- 공고일정 : (신청/접수) '18년 1월 ~ (연중 수시)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02-368-8752~5

41

5. KOTRA





CONTENTS

- I KOTRA 소개
- II KOTRA 기능
- III KOTRA 주요 사업
- IV KOTRA 활용법



I. KOTRA 소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 KOTRA 세계 경제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p>KOTRA 출범으로 수출드라이브의 시동 걸다 [수출 1억불]</p> 	<p>수출정보센터를 세계무대 본격 진출하다 [수출 100억불]</p> 	<p>KOTRA 전시사업으로 수출대국의 기반을 다지다 [수출 500억불]</p> 	<p>국가투자기관으로 IMF극복하여 무역대국 진입에 앞장서다 [수출 1,000억불]</p> 	<p>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시키다 [수출 5,000억불]</p> 

I. KOTRA 소개

세계 어느곳이든 KOTRA! 86개국 127개 해외무역관 (10개 지역본부)



II KOTRA 기능

II. KOTRA 기능



III KOTRA 주요 사업

Ⅲ. KOTRA 주요 사업

해외진출종합상담지원

수출, 해외투자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종합 상담 지원

대상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진출전략, 대금 결제 및 수출보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등 **무역실무 전반**
해외인증 및 검사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통관 애로 등 **무역애로 전반**

신청 방법 고객안내센터 1600-7119(2번), 온라인 상담(tradedoctor.kotra.or.kr), 방문상담 본사 1층

글로벌 역량진단-GCL TEST

기업별 8대 수출역량 진단을 통해 부족한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천

대상 수출역량 진단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역량 분석 :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
시장 분석 : 시장성(접근성, 매력도, 성장성,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동향 제공
지원사업 추천 :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 '글로벌 역량진단' 신청 → GCL Test 설문답변 → 분석정보 확인 → 컨설팅

Ⅲ. KOTRA 주요 사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 전문위원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 1:1 밀착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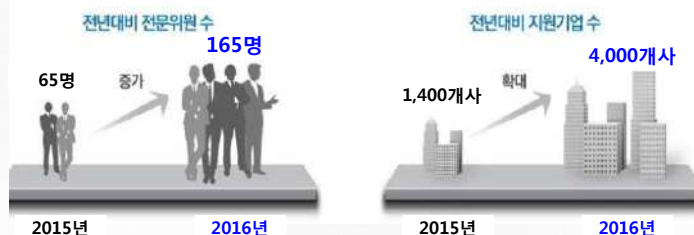
대상 수출이 전문한 내수기업 **4,000개사** (*중소기업 기본법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선정 기준 GCL Test, 해외시장성 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 기업
* 수출 준비 및 의지가 있는 기업 우대

지원 내용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품목, 지역별 전문 담당분야 지정)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지원 기간 1년간 지원 후 수출성약시 졸업
수출성약이 없는 경우 업체의사에 의거 연장지원

신청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공지(연3회) → 시장성 평가, 글로벌역량테스트(GCL), 방문심사 → 기업선정
→ 수출전문위원 배정 → 무역실무, 바이어 발굴, 계약체결 등 전 과정 지원 → **수출기업화 전환**



Ⅲ. KOTRA 주요 사업

지사화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참가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 해외 지사 설립 여력(비용, 정보 등)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

규모 수출 유망기업 **3,500개사**

지원 내용 **해외진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차별화 및 맞춤형(신규거래선 발굴, 세일즈랩 등) 지원

단계	기간	지원 내용(안)	비고
진입	6개월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발굴, 수출가능성 점검, 현장진출 컨설팅	수출초보기업 우대 (수출액 10만불미만)
발전	1년 이내	신규거래선 발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컨설팅,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시장·산업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현지유통망 입점, IP등록 등	수출유망기업 (수출액 10만불이상) 해당지역 진입단계 既참가기업 우대
확장	1년 이내	기술수출 및 제휴,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현지 법인설립, GVC, 기타	수출유망 및 강소기업 (수출액 100만불이상) 해당지역 발전단계 既참가기업 우대

참가 비용 연간 **250~300만원** (지역별 상이)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접속 → '지사화 사업' 신청(연중) → 해외무역관 시장성 검토 → 수용 → 참가비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시행(1년 해외전담직원) → 사업 종료 후 6개월간 A/S 지원

Ⅲ. KOTRA 주요 사업

무역사절단 (Outbound)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실시

대상 내수·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연 200회 내외 파견** - 1회 파견 시 2~3개 해외무역관 소재지 방문 및 바이어 수출상담 실시

* 항공임, 숙박비는 업체 부담
수출 상품에 대한 관심국가별 **시장동향 보고서 및 유망 바이어 발굴**

선정 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기준 적용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연간 사업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가신청 → 품목 시장성 조사 → 선정 → 무역사절단 파견 → 수출상담 사후 A/S 지원 (2개월)

수출상담회 (Inbound)

▣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개별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수출상담 기회 제공

지원 내용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후 A/S 지원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연간 사업계획 확인 → 참가 신청 → KOTRA 해외무역관 **바이어 방한 유치** → 국내기업 수출상담

Ⅲ. KOTRA 주요 사업

월드챔프

- ▣ 정부-참가기업간 50:50 매칭 사업비(기본 1억) 조성
- ▣ 기업-전문위원(본사)-해외무역관 3자 협력 기반 맞춤형 해외마케팅 추진

대상 산업부, 중기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 기업

규모 연간 200개사 내외

지원 내용

구분	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Post 월드챔프
지원대상	① 사업재개편 승인기업 ② 글로벌강소기업 R&D 우수기업 ③ ATC 우수기업 ④ 대기업 전속거래기업 등	① 월드클래스 300 ② 글로벌 전문후보기업	월드챔프 졸업기업
업체선정	자체선정	산업부/중기청	산업부/중기청
지원기업수	30개사 내외	150개사 내외	40개사 내외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3년
지원한도	최대 5,600만원(70%)	최대 7,500만원(50%)	최대 4,500만원(30%)

신청 방법

산업부·중기청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선정공고 → 신청, 심사 → 월드챔프 가입 → 목표시장 선정 및 해외마케팅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Ⅲ. KOTRA 주요 사업

해외전시회 지원

-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 구성 지원
- ▣ 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시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 지원

대상 해외 지사 설립 어려움(비용, 정보 등)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①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한국관 참가)
 - (참가비)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 상한 범위 내 지원
 - (행정지원) 한국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출입증, 디렉토리 신청
 - (해외마케팅)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바이어 리스트 제공,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 ②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부스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등 참가경비 회당 최대 500만원 원(최대 2회)

선정 기준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 (선정시 우대)

신청 방법

글로벌 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 접속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약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IV. KOTRA Q & A



<div style="background-color: #c0000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KOTRA 사업이 궁금하다면?</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홈페이지 : www.kotra.or.kr ▶ 고객안내센터 : ☎ 1600-7119 ▶ 온라인마케팅 : www.buykorea.org 	<div style="background-color: #003366;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해외 시장 및 상품 정보가 궁금해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뉴스 : http://news.kotra.or.kr ▶ 조사대행 : 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사업' 신청
<div style="background-color: #006666;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해외 마케팅 사업 참가하려면?</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 www.gep.or.kr ▶ 무역사절단 : www.kotra.or.kr → 사절단 파견기관에 참가 신청 	<div style="background-color: #ff990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나만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상담 : tradedoctor.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 : www.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 GCL 설문 ▶ 이동 KOTRA : www.kotra.or.kr → 이동 KOTRA 신청 → 방문 상담

